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22. 1. 21.>

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15일

신고인	대표자	등록번호
	영업소명	전화번호

	변경 전	변경 후
등록사항		

변경사유	
분실사유	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1부 (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변경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 검사	→	현지 확인 및 심사	→	판정 및 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				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